

(초)고령투자자 체크리스트(장외파생상품용)

【판매자 외】영업점장 및 관리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합책임자 사전 확인용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투자자가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시 신규계약 체결 이전에 관리직 직원(영업점장 및 관리자, 준법감시담당자 또는 감사통합책임자)이 해당 고객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고객의 이해여부 및 상품가입 등의 투자권유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확인 사항		예	아니오
		(V체크)	
1. 투자상품의 적합성 여부(주1)	고객이 '일반투자자 투자정보확인서[개인고객]'을 통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투자 등급을 분류하고, 적합한 투자가능상품임을 확인하였습니까?		
2. 위험회피 목적 확인	고객의 위험회피(헤지) 목적 여부를 기초자산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였고, 해당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투자권유 적법성	상담직원이 본 상품을 고객에게 부적절하게(상품 판매를 위한 투자정보 변경 또는 유도 등) 권유하였습니까?		
4. 주요설명의 이해	고객이 본 상품의 기본적인 손익구조, 원금손실 가능성, 중도해지가능 여부 등에 대해 상담직원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5. 건강 및 인지 능력	<p>현재 고객의 건강 상태 및 아래 예시항목의 인지능력(기억력, 판단력 등)에 비추어 주요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관계, 주변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 등 		

※ 사전확인 유의사항

▶ (주1) (초)고령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고객에게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원금 손실 발생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것 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특히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투자자의 경우 조력자 미방문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 [확인사항 3~5번 중 하나라도 '예' 체크 있는 경우]

사전확인 결과, 권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실 및 은행이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합니다.

확인 일자 : 20 년 월 일

【관리직직원】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인)

